

구글의 반독점행위 조사 예정 발표

2011년 3월 11일, 미국 상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회 허브 콜(Herb Kohl) 위원장(공화당)은 "이번 회기 중에 세계 최대 검색엔진업체인 구글로 인해 촉발된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문제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구글이 최근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해 온라인 광고와 전자상거래 시장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강화한 점을 특히 주목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리(Mike Lee) 상원의원(공화당)도 콜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경쟁법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트래픽(Traffic) 기준 65.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장했다.

리 의원이 공개서신을 통해 제시한 반독점소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구글(Google) 관련 경쟁법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온라인 광고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으로, 구글은 경쟁자인 쇼핑·여행 등 특정분야 검색업체에 대하여 부당하게 검색결과 화면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애드워즈'(AdWords)를 통한 검색어(키워드, keyword) 광고비용을 과도하게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드워즈는 구글이 운영하는 온라인 광고 중개 프로그램으로, 광고주를 구글 검색광고 및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는 '기업결합' 관련 사항으로, 당시 미국 법무부(DOJ)에서 진행하던 구글과 ITA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하여 여행 검색·예약분야에서 구글의 독점력 강화문제를 제시하였다. 구글과 ITA의 기업결합은 구글이 여행 예약 소프트웨어업체인 ITA 소프트웨어(ITA Software)를 인수하는 7억 달러 규모의 인수 건으로, 이에 대하여 경쟁정책 연구단체인 AAI(American Antitrust Institute) 등이 온라인 광고검색 서비스 및 기술시장에서의 경쟁제한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셋째는 '개인정보 축적'에 대한 것으로, 구글이 검색, 광고, 이메일(Gmail), 이동전화 운영체제(OS: Android) 등을 통하여 확보한 개인정보와 소비자 구매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의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및 추가적인 시장지배력 확보 가능성을 쟁점으로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반독점소위원회의 조사계획에 대하여 구글측은

"다양한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대기업으로서 반독점행위 조사가 특별한 사항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조사대상이 된 만큼 규제기관들이 검색 서비스와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구글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해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구글과 경쟁자들 사이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참여하는 시장이 '초경쟁적'(Hyper-Competitive)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법적인 측면에서의 우려가 지나친 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들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환경에서, 구글이 전통적인 방법(가격 인상, 생산량 제한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최근 들어 구글의 경쟁자 가운데 트위터(Twitter)가 빠르게 성장 중이고, 페이스북(Facebook)은 최근 총 방문객 수에서 구글을 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2월에는 검색결과 개선을 이유로 한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Algorithm) 변경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비난이 대두(對頭)된 바 있다. 우량 콘텐츠를 우대하고 불량 콘텐츠를 가려낸다는 명목으로 검색 프로그램의 논리구조를 갑자기 변경한데 대하여 관련 업체들이 반발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구글은 콘텐츠 팜(Content Farm)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콘텐츠 팜이란, 검색 횟수가 많은 콘텐츠를 모방하거나 저급한 콘텐츠를 편집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검색 순위를 높여 광고수입을 확보하는 온라인업체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한편, 구글은 현재 EU와 미국 텍사스 주(州)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EU의 조사는 반독점행위를 신고하였던 프랑스의 검색엔진업체인 1PlusV가 구글이 부복행위를 하였으며, 2011년 2월 EU에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졌다. 미국 텍사스 주 법무부의 조사는 구글의 검색 결과에서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인터넷 광고주들이 2010년 9월, 텍사스 주 검찰에 신고한 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PEC의 원유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 및 입법 동향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월 8일,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 국영 정유회사들의 원유가격 담합에 대하여 미국 휘발유 소매업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한 연방지방법원(텍사스 주)의 기각판결을 지지(항소기각)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 한 국가가 자국 내에서 행한 주권적 행위에 대하여 외국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이론으로, 미국 판례법상 '사법자제의 원리'에 근거함)을 근거로, OPEC 회원국 정부가 관여한 담합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항소법원은 원유 수입 차질, OPEC 회원국과의 외교관계 악화, 미국내 외국인 투자감소 등 집단소송에 의한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천연자원의 처분과 같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관한 문제는 사적 소송보다 외교채널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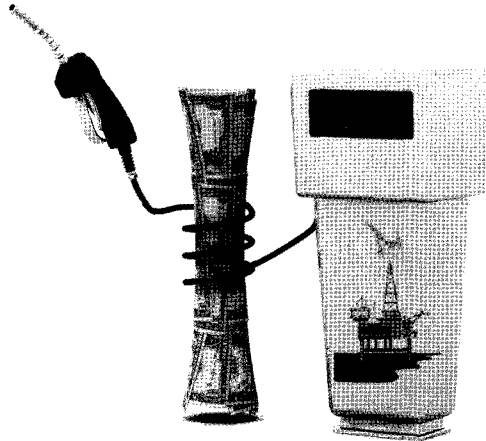
위와 같은 항소법원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전원재판부 재심리(En Banc Hearing)를 신청할 것이 예측되면서, 향후 절차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미국 상원 반독점법사소위원회 의장인 허브 콜 의원은 2월 17일, DOJ에게 외국 정부의 원유가격 담합에 대한 소제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1978년 연방지방법원 판결(천연자원의 이동에 관한 조건의 설정은 외국의 주권적 행위라고 판단하여 소각하(訴却下) 판결(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 v. OPEC))에 의하여 OPEC 회원국들의 원유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콜 의원은 "동 법안이 사적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정부의 행위에 대한 DOJ의 관할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난 2007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의회 통과에 실패한 바 있는데,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대하여 각국에서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되는 가운데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이번 입법노력의 성사 여부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규제개혁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조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2011년 1월 18일, 전 연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라는 행정명령(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 Executive Order 13563)을 발동하였다. 2009년 출범 취임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규제 비용·편익분석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정보공개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연방규제 개선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은 자유시장원칙과 공익보호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규제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상충되는 중복규제(Patchwork of Overlapping Rules)의 발굴 및 해소를 통하여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사카란의 경우에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결정한 반면,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로 판정하여 일반 대중에게 혼란을 주었지만, 2010년 12월 EPA가 동 규제를 삭제하여 국민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이번 행정명령은 각 부처들로 하여금 규제법규가 소(小)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히 주목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내 민간부문 근로자의 50% 이상이 소기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기업이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는데, 최근 15년간 미국내 신규 일자리의 60% 이상이 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RFA)을 통하여 소기업이 규제로 인하여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충격의 완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RFA는 규제대상마다 규모 및 여건(Resources)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① 규제순응기간의 연장 ② 보고 및 순응 관련 요구사항의 단순화(간결한 서식과 전산파일 활용) ③ 기업규모에 적합한 사항 요구 ④ 규제의 부분 또는 전체 면제 등을 통하여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연방정부의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검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원칙과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규제개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규제는 건강, 복지, 안전, 환경보호 등 규제 목적의 달성과 동시에 경제성장, 혁신, 경쟁력, 일자리 창출도 달성하여야 한다. 또한 규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피(彼)규제자의 순응비용 최소화 기준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특히 특정한 행위(Behavior)를 강제하기 보다는 성과(Performance) 중심의 기준을 제시하여 혁신을 유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관련 제도·규정의 제정 및 운영과정에서 관련자들의 효과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규제 개혁의 실행방안으로는 일반 대중이 낮은 비용으로 규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의견 제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들 간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불필요하며 일관적이지 않고, 중첩되는 규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각 연방정부기관은 주기적으로 기존 규제를 검토하기 위한 계획을 120일 내로 작성하여 연방정보·규제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 발동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하여 비판적이었으며 규제 개혁을 요구해오던 기업 측에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인 톰 도너휴(Tom Donohue)는 "연방 법규가 미세한 활자로 15만 쪽에 달하며 최근 규제의 급증으로 1년에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초래한다"고 규제의 과다함을 지적한 바 있다. 다렐 이사(Darrell Issa) 하원 정부개혁위원회(공화당)는 이번 조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국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돕는 규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최고법원, 이윤압착행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성 판단기준 제시

유럽최고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은 2011년 2월 17일, 이윤압착(Margin Squeeze)만으로도 TFEU 제102조를 위반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윤압착'이란,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가 상부(上部)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상황에서 하부(下部)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가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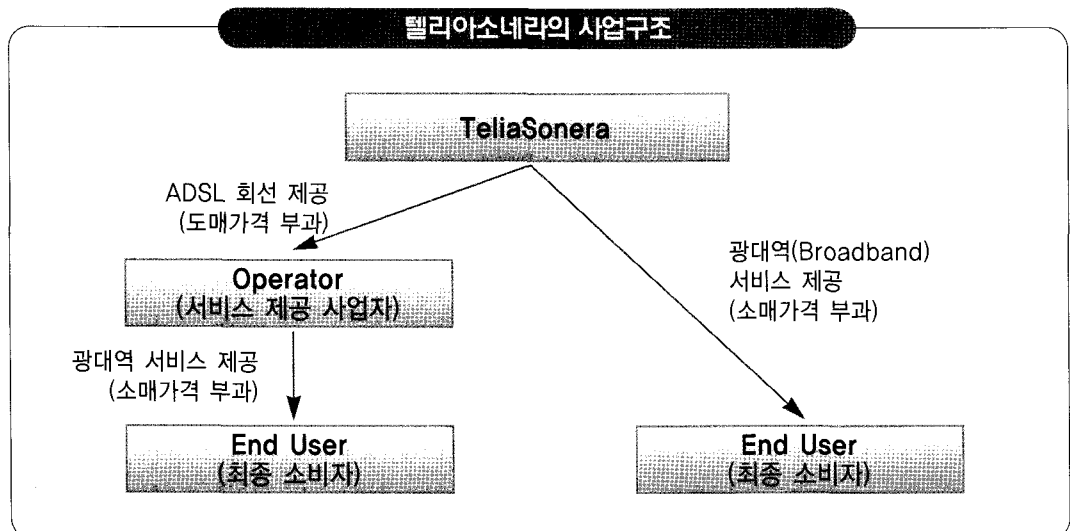
유럽최고법원이 이윤압착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법관계 및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04년 스웨덴 경쟁당국은 북유럽 최대의 전화·인터넷 사업자인 텔리아소네라(TeliaSonera)에 대하여 이윤압착적인 가격정책을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텔리아소네라는 광대역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ADSL 회선을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였다.

이에 스웨덴 경쟁당국은 텔리아소네라에 1,3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송을 스톡홀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동건을 검토하던 스톡홀름 지방법원은 2009년 2월, 이윤압착행위 단독으로 TFEU 102조를 위반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되기 위한 조건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유럽최고법원에 사전심리(Preliminary Ruling)를 요청하였다. 스웨덴 경쟁법과 EU 경쟁법은 관할대상의 범위만 다를 뿐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였기 때문에 TFEU 102조 위반 여부를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경우에 이를 바탕으로 지방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윤압착행위만을 근거로 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성립 여부에 대한 EU 최고법원의 판단은, 미국 연방대법원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년 링크라인(linkLine) 판결에서 반독점법상 거래의무가 없는(No Duty Under Antitrust Law to Deal) 수직통합사업자의 이윤압착행위는 - 약탈적 가격설정이 아닌 한 - 그 자체로 법 위반의 남용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법리 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톡홀름 지방법원의 질의사항 및 이에 대한 유럽최고법원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수직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과하는 도·소매가격의 차이(Spread)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TFEU 102조 위반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A1. 텔리아소네라가 부과한 ADSL 도매가격과 광대역 서비스 소매가격간 차이가 텔리아소네라가 최종 소비자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작은 경우, 범위반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텔리아소네라의 [광대역 서비스 소매가격 < ADSL 도매가격 + 광대역서비스 공급비용]인 경우, 남용에 해당한다.

Q2. 남용 여부 판단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과하는 소매가격만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또는 '경쟁사업자'가 부과하는 가격도 고려하여야 하는가?

A2. 남용 여부의 판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인(Equally Efficient)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 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및 비용정보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 원칙이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및 비용정보를 알 수 없는 특수한 경우는 경쟁사업자의 가격 및 비용정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Q3. 남용 여부 판단시, 당해 행위에 반경쟁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혀야 하는가?

A3.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행위에 반경쟁적 효과가 있음을 밝혀야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단지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자의 잠재적 배제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Q4. 남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도매상품이 소매상품 공급에 필수불가결(Indispensable)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인가?

A4. 도매상품이 소매상품의 공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라면 남용이 성립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남용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Q5.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ADSL 회선을 제공할 규제적 의무(Regulatory Obligation)가 없다는 사실은 남용 여부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5. EU 경쟁법은 정부규제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닌, 사업자가 자발적 의사로 행한 모든 행위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규제적 의무의 유무는 남용 여부의 판단과 무관하다.

Q6.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은 남용 여부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6. 도매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의 존재는 남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시장지배력의 정도는 반경쟁적인 효과의 크기 판단에만 반영될 뿐 남용 여부 판단과는 무관하다. 또한 소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없어도 도매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소매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소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유무는 남용 여부의 판단과 무관하다.

Q7. 남용 여부 판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정책 대상고객(광대역 서비스 제공 사업자)이 신규 사업자라는 점에 따라 달라지는가?

A7. 남용 여부 판단 시에는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므로 대상고객이 기존 또는 신규 사업자인지는 남용 여부 판단과 무관하다.

Q8. '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가?

A8. 이윤압착을 통한 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도·소매가격의 차이만 문제가 될 뿐 지나치게 높은(낮은) 도매(소매)가격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실 회복 가능성과는 무관하다.

Q9. 높은 초기투자를 요하는 신기술 관련 시장이거나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이기에 사업자들이 낮은 이윤을 감수하고서라도 영업할 유인이 있다는 점은 남용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A9. 이윤압착을 통하여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법집행의 목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성숙도 및 신기술 관련성 등은 위법성 판단과 무관하다.

국무원, 기업결합에 관한 안전심사제도 관련 규정 발표

중국 국무원은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기업결합(합병, 지배권 취득 등)에 대한 안전심사제도와 관련된 규정인 「외국투자자 중국내 기업결합 안전심사제도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 2011 6号)를 제정(2011년 2월 3일)하고 시행하였다.

이 규정은 반독점법 제31조(안전심사제도)의 적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기업결합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의 범위(대상), 내용 및 절차 등을 명기하였는데 의미가 있다.

이 규정은 외국투자자가 중국내 방위산업(军工) 관련기업, 중요 군사시설 주변기업 및 기타 국가안전과 관련된 기업 즉, 중요 농산품, 에너지 자원, 기초시설, 운수 서비스, 기술 및 장비제조 관련 기업 등을 합병하거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할 경우에 적용되며, 국가안전(방위산업 생산·서비스 제공능력 및 관련 시설 규모 등), 국가경제 운영, 사회질서, 국가안전과 관련된 중요 R&D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기준으로는 제시하고 있다.

국무원 주도 하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및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연석회의에서 안전심사를 담당하고,

외국투자자 등이 상무부에 안전심사를 신청하면 상무부는 신청 후 5일 이내 연석회의에 제출하고, 연석회의에서 심사를 개시한다.

일반심사는 35일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특별심사가 필요할 경우는 60일을 추가할 수 있다.

상무부는 제출서류와 심사기준 등을 포함한 「안전심사제도에 관한 임시규정」을 제정(2011년 3월 4일)하였고, 관련 내용을 완비하여 추가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기업결합이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연석회의에서 상무부나 관련 부서에 기업결합 중단·취소, 보유 지분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기존의 기업결합심사절차와의 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요망된다.

일각에서는 안전심사제도가 중국 국내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그 운용실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www.gov.cn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반독점법 관련 규정 비교

2011년 2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반독점법 하위규정을 제정하여 공표·시행하였다.

가격 관련 행위를 규제하는 국가발전개혁위와 비가격 관련 행위를 규제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반독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합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면서 담합의 위법성 요건, 적용대상 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실무적으로 하나의 사건에 가격 관련 행위와 비가격 관련 행위가 모두 포함될 경우, 먼저 신고서가 접수된 기관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두 기관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처리하거나 신고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기관에서 처리되도록 신고내용을 왜곡하는 등 법집행의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의 규정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특정적 합의 관련 규정* 비교

* 반독점법

- NDRC : 반가격독점규정(규정), 반가격독점 법집행절차 규정(절차규정)
- SAIC : 독점합의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합의금지규정)

	NDRC	SAIC
합의입증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동조적 인상 • 의사 교환 [규정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일치 • 의사 교환 또는 정보 교환 • 행위 정당성 여부 [합의금지규정 제3조]
적용대상행위	수평적·수직적 합의, 사업자단체 행위 [법 제13조~제16조]	
수평적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사업자 간의 가격담합 [규정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의 생산·판매량 제한, 시장분할, 기술개발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등 [합의금지 규정 제4조~제7조]
수직적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규정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없음
사업자단체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관련 경쟁제한행위 등 [규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이외의 조건에 관한 경쟁제한 행위 [합의금지규정 제9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범위만 내용을 자발적으로 신고 • 중요한 증거 제공 • 반독점집행기관 재량으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 [법 제46조] 	
중요한 증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담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절차규정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보, 관련 상품, 합의에 도달한 수단 등에 대한 증거 [합의금지규정 제1조]
감경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는 처벌 면제 • 2순위는 50% 이상 감경 • 3순위는 50% 이하 감경 [절차규정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는 처벌 면제 • 다음 순위에 대한 기준 없음 [합의금지규정 제2조]
감면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부과처에 적용 • 불법적인 이익 몰수처에 적용 안됨 [합의금지규정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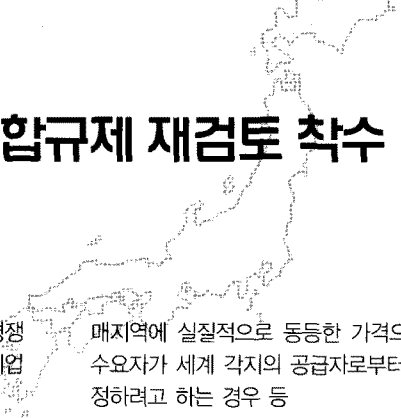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 비교

- * 반독점법(법)
- NDRC : 반가격독점규정(규정), 반가격독점 법집행절차 규정(절차규정)
- SAIC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시지금지규정)

	NDRC	SAIC
시장지배적 지위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시장에서 상품가격·수량 및 기타 거래조건 통제 가능성 • 다른 기업의 관련 시장 진입 저해 가능성 [법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시지금지규정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조건 내용(품질, 지불기간, 배달방법, 애프터서비스 등) 상술 • 진입 저해 가능성 판단기준(기간, 비용 등)을 상술 [규정 제17조]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점유율 및 경쟁여건 ② 연관시장에 대한 통제력 ③ 재정상태 및 기술능력 ④ 거래 의존성 ⑤ 신규 진입 제한 ⑥ 기타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⑥ 각 요소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판단기준을 상술 [시지금지규정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동 [규정 제18조] 	
추정	시장점유율 기준 : 1개 사업자 50% 이상, 2개 사업자 66% 이상, 3개 사업자 75% 이상 단, 10% 미만 제외 [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동 [시지금지규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동 [규정 제19조] 	
추정의 복멸	시장지배적 지위가 추정되는 사업자가 반증 가능 [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지금지규정 제10조의 각 요소를 반증 [시지금지규정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동 [규정 제19조] 	
적용대상	가격 남용, 부당염매, 거래 거절, 배타적 거래, 끼워팔기, 차별적 취급 등 [법 제17조]	
행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위별로 가격을 이용한 남용행위 세부유형 규정 [규정 제11조~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위별로 가격이 아닌 방법을 이용한 남용행위 세부유형 규정 [시지금지규정 제4조~제7조]
정당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위별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규정 [규정 제11조~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사유의 요건을 일반규정으로 규정(① 일 상영업 여부 ② 경제성장,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 [시지금지규정 제8조]



공취위, 기업결합규제 재검토 착수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전략적 사업재편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결합심사제도의 재검토에 착수하였다.

이는 2010년 9월 10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신(新)성장 전략 실현을 향한 3단계 경제대책'의 일환이다.

그 추진경과를 보면, 2010년 6월 18일 '신성장전략'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되고, 2010년 9월 10일에는 '신성장전략 실현을 향한 3단계 경제대책'이 결정되었는데, 여기에 '기업결합규제의 재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2011년 1월 25일 '신성장전략 2011'에서 기업결합규제(심사절차 및 기준)의 재검토를 2011년 과제로 선정하였다.

검토내용은 기업결합심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의 개편에 관한 것으로, 경단련(經團連; 경제단체연합회) 및 관경련(關經連; 관서경제연합회)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매지역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 수요자가 세계 각지의 공급자로부터 주요 구매처를 선정하려고 하는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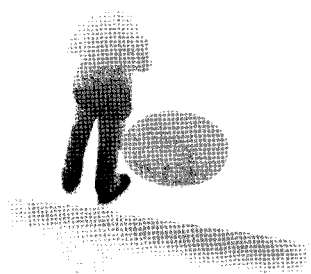
- ② 현재 수입이 행하여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로부터의 경쟁압력을 평가한다는 것
- ③ 가까운 장래에 가능한 경합품의 경쟁압력(인접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도 고려대상으로 한다는 것 등을 명시
- ④ 회생불가회사 인정에 관한 예시를 추가하여 당사회사의 일방이 계속적으로 대폭적인 경성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와 사업부문이 대폭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
- ⑤ 기업결합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의견권 보유비율 10% 이하 등의 경우는 기업결합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명시하고 신고서 기재내용도 간소화하였다.

먼저 심사절차 재검토 내용으로는

- ① 사전상담제도와 관련하여 정식신고 전 임의적 사전상담 제도를 폐지하고, 정식신고 후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
- ② 신고회사와 공정취인위원회 간의 의견교환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신고회사에 2차(심층)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시 그 취지를 기재하고 논점 등을 설명하고, 신고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문제 해소방안을 포함한 의견서 및 자료 등을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
- ③ 심사결과의 신고회사에 대한 통지와 관련하여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없는 안전에 대해서는 문서로 통지하고 2차(심층) 심사결과는 이유를 포함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것
- ④ 심사결과의 공표와 관련하여 2차(심층) 심사결과는 공표하도록 하고, 1차 심사결과도 다른 회사에 참고가 될 만한 경우에는 공표하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심사기준의 재검토 내용으로는

- ① 세계시장을 고려하는 경우의 예시를 추가하였는데, 이에 해당되는 것은 주요 공급자가 세계시장의 특정 판



공동의 거래거절 위법성 판단기준 제시한 첫 판결 나와

2011년 2월 18일, 일본 대법원이 소니뮤직(Sony Music) 등 대형 음반제작사들이 제기한 공동의 거래거절과 관련된 공정취인위원회 심결 취소소송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일본 도쿄 고등법원이 제시한 공동의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확정되었다.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Universal Music), 에이벡스마케팅(Avex Marketing), 빅터엔터테인먼트(Victor Entertainment) 등 대형 음반제작사들은 휴대폰 벨소리를 제공하기 위한 자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다른 벨소리 제공업체에게 자신이 보유한 음원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싱(Licensing)을 거절하였다.

2008년 7월 24일, 일본 공취위는 대형 음반제작사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휴대폰 벨소리 제공 서비스 시장의 신규 진입을 제한한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배제조치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형 음반제작사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일본 도쿄 고등법원은 음반사들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을 기각하면서 공동의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고등법원은 독점금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으로'란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경쟁사업자 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의 연락'이란 명시적인 합의가 없이도 다른 사업자의 행위를 인식·예측하고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중**

참고 : 독점금지법 관련 규정

◎ 제2조 제9항 : 이 법률에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이란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경쟁자와 공동으로,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1) 어느 사업자에 대하여 공급을 거절하거나 또는 공급에 관련된 상품 혹은 역무의 수량 혹은 내용을 제한